

2023년 경북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2차 지원공고

공공연구기관(출연(연), 대학, 전문(연) 등)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3년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5월 30일

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

1. 포항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개요

- (목적) 기술사업화 전주기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“지역 주도 강소형 첨단신소재 거점 육성”
- (육성방향)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을 통한 첨단신소재분야(바이오/에너지/나노)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지원
- (육성전략) 기술핵심기관 및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기반으로 첨단신소재분야 창업초기 기업 또는 중소/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상용화 - 성능시험 - 시제품제작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

2. 공고대상 사업

사업명	사업지원 대상	예산 (백만원)	지원 내용
기술이전 실증 지원사업	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특구 내 기업	240	기업과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 매칭 또는 기업 단독으로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사업화 초기 실증지원
첨단신소재 All-in-One 패키지 지원사업	특구 내 첨단신소재분야 기업	90	첨단신소재(바이오·에너지·나노 소재) 제품 상용화 시 필요한 성능시험, 안전성평가,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전략 등에 대한 단일 또는 패키지로 기업 맞춤형 지원

* 위 내용은 세부분야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,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(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)은 별첨의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세부사업 안내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.

[별첨 : 2023년도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세부 사업 지원공고문 1식]

2023년도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세부 사업 지원 공고

I

세부사업 내용 및 신청접수 안내

■ 포항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세부사업 구성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
| 1. 기술이전 실증 지원사업 | | 3 |
| 2. 첨단신소재 All-in-One 패키지 지원사업 | | 13 |

■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

-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

-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홈페이지(<http://innopolis.postech.ac.kr>)
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innopolis.or.kr>)
- 포항공과대학교(<https://www.postech.ac.kr>)
- (재)포항산업과학연구원(<http://www.rist.re.kr/>)
- 포항테크노파크(<https://www.ptp.or.kr/>)
- 포항시(<http://www.pohang.go.kr/>)

■ 공고 및 접수방법

○ (접수기간) 상기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종료일의 16:00까지

*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.

○ (접수방법)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(접수기간 종료일 16:00)까지 **온라인 E-mail** 접수

- 신청 : 사업별 담당자 E-mail 주소로 신청

사업명	공고기간	접수기간
1. 기술이전 실증 지원사업	'23. 5. 30. ~ '23. 6. 16.	'23. 6. 5. ~ '23. 6. 16.
2. 첨단신소재 All-in-One 패키지 지원사업		

■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

○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사업명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1. 기술이전 실증 지원사업	박성조 (책임)	054-279-9307	psj2686@postech.ac.kr
2. 첨단신소재 All-in-One 패키지 지원사업	임지영 (주무관)	054-279-9305	lgy940215@postech.ac.kr

■ 기타사항

-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, 지원내용 · 조건, 접수방법 등은 “세부사업별 공고문”에 따르며,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”, “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” 및 “포항강소특구 지역 특성화육성 사업 자체기준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 - *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, 사업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 · 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본 공고사업의 평가·관리에 적용될 수 있음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대상 R&D를 통한 공공기술 실증 지원으로 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

사업내용

-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포항강소특구 내 기업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제품화 또는 이전기술 실증 지원

2. 지원내용

사업예산 : 240백만원

지원규모 : 과제 당 최대 80백만원 × 3개 과제 내외

사업기간 : 선정시 ~ '24. 1. 31까지

지원방식 : 직접지원방식

- 기업(특화지원기관), 공공연구기관(공동연구개발기관) 모두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사업비 집행

※ 특화지원기관, 공공연구기관 모두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나, 사업비는 위탁연구개발비로 지급(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 지침 준용)

※ 공공연구기관이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일 경우 포항공과대학교 내부과제 (SAP)로 사업비 편성

※ 과제의 성과 소유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(국가연구개발혁신법)

지원대상 : 포항강소특구 지정일('19. 6.) 이후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포항강소특구 내 기업

□ 지원내용

○ 기업(특화지원기관) - 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 형

- 특화지원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) :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공공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전받은 기술을 실증하고자 희망하는 포항강소특구 내 기업
 - ※ 첨단신소재(바이오, 에너지, 나노) 및 4차산업(AI, 빅데이터, IoT) 관련 공공 기술 실증화 우대
- 공공연구기관(공동연구개발기관) : 해당 공공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공공기술 실증화가 가능한 포항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
 - ※ 해당 공공기술의 발명자와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화 가능한 연구자와도 컨소시엄 구성 가능

□ 지원방법

○ 신청기업은 포항강소특구 지정일 이후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하였으며,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

- ※ 이전 받은 공공기술의 소유 공공연구기관(공공기술 발명자)과의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화 가능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와도 컨소시엄 구성 가능

< 경북 포항시 내 공공연구기관 >

○ 경북 포항시 내 공공연구기관

- 포항공과대학교, (재)포항산업과학연구원, (재)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, 한국로봇융합연구원, 한동대학교, 한국지질자원연구원(포항지질자원연구실증센터), 기타 포항 소재 공공연구기관

□ 지원제외 대상

○ '22년, '23년 기술이전사업화(R&BD) 수행기업 또는 선정기업

- ※ '23년 기술이전사업화(R&BD) 신청기업이 기술이전 실증화 지원사업에 신청 하였을 경우, R&BD 사업 선정 시 기술이전 실증화 지원사업은 '지원제외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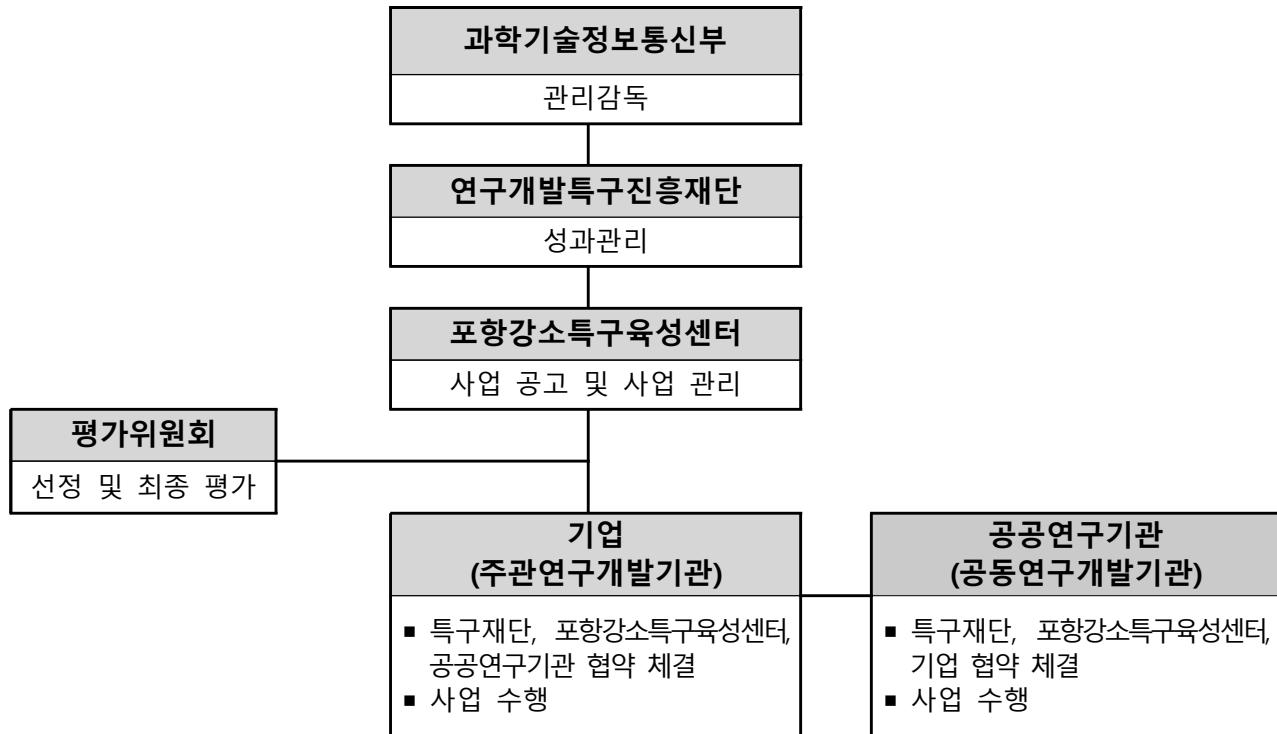
○ '22년도 기술이전실증지원사업 수혜기업

○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5호)의 "제14조(사전검토)"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함(공고문 8페이지 참조)

-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: 100% 정부출연금 지원
-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- 기타사항
 - 기업 - 공공연구기관간 공동 특허 출원 必(특허 출원비용은 사업비로 지원 불가하며, 기업 - 공공연구기관 간 협의하여 지불)
 - 컨소시엄간 사업비 배분은 50:50을 원칙으로 하나,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의 의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 추진체계



□ 추진절차

<u>절차</u>	<u>일정</u>	<u>주요내용</u>
사업공고	'23. 5. 30. ~ '23. 6. 16.	○ 모집 공고
↓		
사업신청 접수	'23. 6. 5. ~ '23. 6. 16.	○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
↓		
사업내용 평가	'23. 6월 중	○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, 지원대상 확정
↓		
협약체결	평가 후	○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
↓		
사업수행	협약기간	○ 사업수행
↓		
사업수행 결과보고	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(~ '24. 2. 15)	○ 사업결과 보고/최종평가
↓		
회계정산	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(~ '24. 2. 29)	○ 회계정산

※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4.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

평가항목

구분	주요 내용	비중(%)
목적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(실증)의 필요성 • 사업내용의 구성 및 목표의 적정성 	30
사업수행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•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• 수행기관(참여인력)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•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적합성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	40
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성 •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• 사업 후속 연계 성과 창출 전략 	30
계		100(%)

※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

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발표평가로 진행함
-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- '지원가능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
※ '23년 기술이전사업화(R&BD) 사업 선정기업은 협약 전 선정 제외 됨
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- * 단,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 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원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
- **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(다만,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(증권시장의 상장), 인수합병, 자금 조달(투자유치)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

검토사항	내용
공고내용과의 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,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•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,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•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"중단"이나 "극히 불량(불성실수행)"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
의무사항 불이행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(각종 보고서 제출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참여제한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아니함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1) 사전지원제외(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업의 부도 2.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 3.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(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 </div>

검토사항	내용
	<p>5.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 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이때,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(CB, BW 등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<p>6.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p> <p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p> <p><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: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·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: 주관연구 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·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
	<p>2) 사후관리(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% 이상 2.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% 이하 3. 부분자본잠식 4.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.0배 미만 5.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한정" <p><사후관리 조치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"사후관리대상"에 해당됨을 보고
과제 참여율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• 단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• 참여연구원(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)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• 국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 사업을 포함하여 130%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

□ 유의사항

공통사항	
가.	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- 「대외무역법」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나.	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다.	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라.	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바.	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마.	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.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바.	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
사.	선정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에 지원 후 5년간 사업 성과(매출, 고용, 투자)를 제출하여야 함

□ 관련법령 및 규정
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○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 자체 기준

5. 신청방법 및 절차

□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

- 사업공고 및 관련 양식 교부
 -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홈페이지(<http://innoplis.postech.ac.kr>)
 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innopolis.or.kr>)
 - 포항공과대학교(<https://www.postech.ac.kr>)
 - (재)포항산업과학연구원(<http://www.rist.re.kr/>)
 - 포항테크노파크(<https://www.ptp.or.kr/>)
 - 포항시(<http://www.pohang.go.kr/>)
- 제출방법 : PDF파일로 E-mail 제출
- 접수기간 : '23. 6. 5.(월) ~ '23. 6. 16.(금), 16:00까지
- 접수처 :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박성조 책임연구원 (054-279-9307, psj2686@postech.ac.kr)

□ 제출자료

-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제출

번호	서 류 명	서식	비고
1	사업신청 공문	-	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
2	연구개발계획서		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
3	사업자등록증(원본대조필)		모든 기관 제출
4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	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
5	수행기관(기업) 의무이행 서약서 ※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		모든 기관 날인하여 제출
6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7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		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
8	연구윤리 · 청렴 및 보안서약서	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9	표준재무제표 증명(원본대조필)	-	최근 3개년도('20 ~ '22), 비영리기관 제외
10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* *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최근년도 기준,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(비영리 제외)
11	기술이전 계약서* * '19. 6 이후 기술이전 계약서 제출		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

문의처

- 담당부서 :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기술사업팀
- 사업담당자 연락처

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박성조 책임연구원	054-279-9307	psj2686@postech.ac.kr

6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,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에게 있음

2

첨단신소재 All-in-One 패키지 지원사업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포항강소특구 특화분야 제품 상용화 지원을 통한 특구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

사업내용

- 첨단신소재(바이오·에너지·나노 소재) 제품 상용화 시 필요한 성능시험, 안전성평가,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전략 등에 대한 단일 또는 패키지로 기업 맞춤형 지원

2. 지원내용

사업예산 : 90백만원

지원규모 : 기업 당 최대 30백만원 이내

사업기간 : 선정시 ~ '24. 1. 31 까지

지원 방식 : 간접지원(바우처 방식)

※ 바우처 :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문수행기관이 공급하고 제공의 대가를 전문수행기관에게 사후에 지불하는 방법

지원대상 : 포항강소특구 내 기업 중 TRL 5 ~ 9 단계에 해당되는 제품 상용화 기업

※ 첨단신소재(바이오, 에너지, 나노) 관련 기업 우대

지원내용

- 시험평가/인증/인허가, 제품제작, 사업화 전략 3개 지원분야 중 기업 수요에 맞춰 단일 또는 패키지* 지원

* 패키지 지원은 기업당 신청 가능한 최대 지원규모는 30백만원

지원 분야	지원내용(세부분야)	사업결과물	매칭방법	지원금액
시험평가/ 인증/ 인허가	(바이오) (시)제품의 독성, 안전성 평가 등	분석보고서	전문수행기관 자율매칭	최대 30백만원
	(시)제품 시험분석 등 성능평가 지원	공인시험성적서		최대 15백만원
	제품의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지원	인증서, 인허가서		최대 15백만원
제품제작	(시)제품 제작 지원 및 기존 제품 성능 보완	시제품	전문수행기관 자율매칭	최대 30백만원
	제품 및 공정 설계, 제품 디자인, 브랜드 개발	설계도, 도면, 브랜드 등 결과물		최대 15백만원
사업화 전략	IPO를 위한 컨설팅	보고서		최대 15백만원
	기업의 특허 강건화 전략 컨설팅	보고서		최대 15백만원

- 지원제외 대상
 - '22년 첨단신소재 All-in-One 패키지 지원사업 수혜기업
 -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5호)의 “제14조(사전검토)”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함(공고문 17페이지 참조)

- 지원방법
 - 신청기업(주관기관)은 각 지원 분야별 최대 지원 규모(분야별 상이)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로 구성하여 사업 신청(기업 당 최대 신청규모는 30백만원 이내)
 -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(기업)을 매칭하여 신청하되 아래 전문수행 기관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 - ※ 선정평가시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
 - 시험평가/인증/인허가(바이오 (시)제품의 독성, 안전성 평가) 분야는 식약처 시험평가기관(의료기기, 비임상, 화장품 등) 또는 CRO 전문기관으로 전문수행기관 매칭 시 우대
 - 사업비 지급은 최종평가 후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에서 전문수행기관에 직접 지급
 - ※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지급이 불가할 수도 있음(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 제1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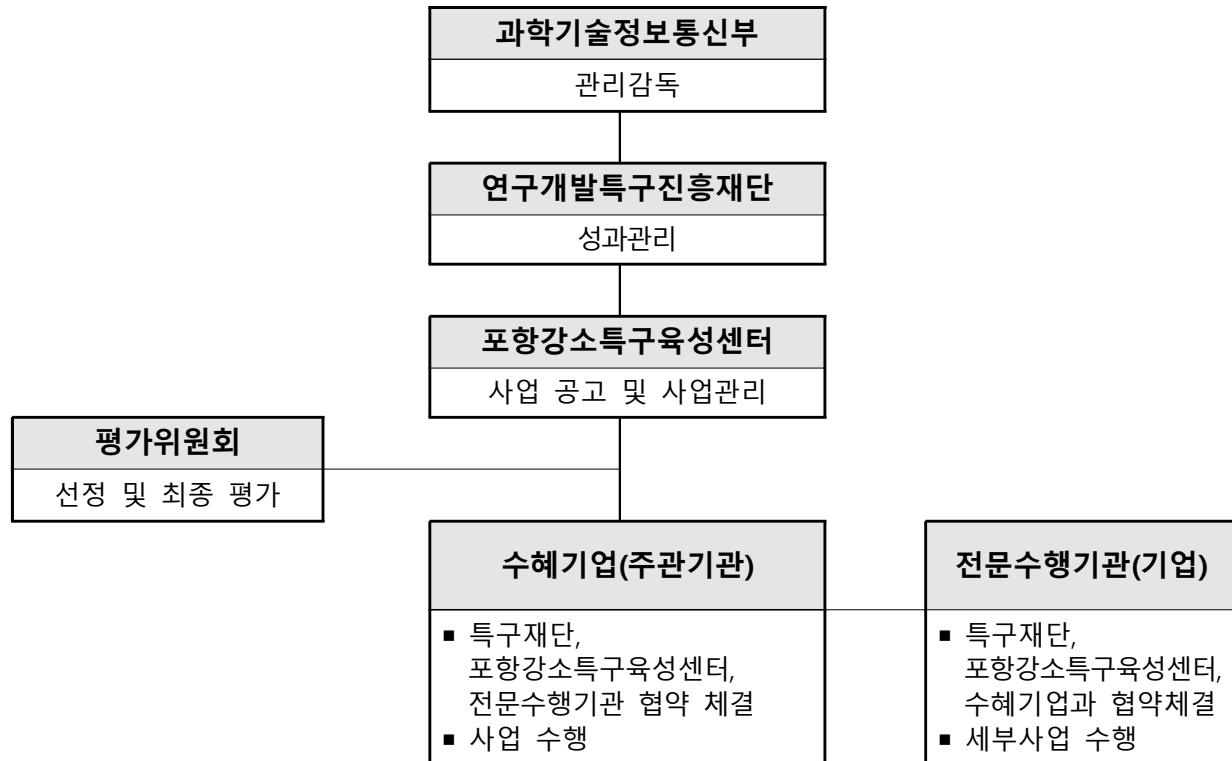
<전문수행기관 기본요건>

- **(기본요건)** 공고일 기준, 해당분야 전문기관(기업)으로서,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2년 이내 해당 분야 실적 5건 이상 보유
- **(제외대상)**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(최근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, 완전자본잠식 등)
 -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
 - 국세/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 - 휴·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

-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: 100% 정부출연금 지원
-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 추진체계



□ 추진절차

<u>절차</u>	<u>일정</u>	<u>주요내용</u>
사업공고	'23. 5. 30. ~ '23. 6. 16.	○ 모집 공고
↓		
사업신청 접수	'23. 6. 5. ~ '23. 6. 16.	○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
↓		
사업내용 평가	'23. 6월 중	○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, 지원대상 확정
↓		
협약체결	평가 후	○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
↓		
사업수행	협약기간	○ 사업수행
↓		
사업수행 결과보고	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(~ '24. 2.15)	○ 사업결과 보고/최종평가
↓		
회계정산	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(~ '24. 2. 29)	○ 회계정산

*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4. 평가절차

평가항목

분류	구 분	평가항목	배점
신청기업 (80)	추진계획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 	20
	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	30
	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	30
전문수행기관 (20)	관련분야 전문성 및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분야의 수행기관 매칭 적합성 및 관련 실적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	20
계			100

※ 평가항목 및 비중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발표평가로 진행함
-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- '지원가능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
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- * 단,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 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
- **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(다만,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(증권시장의 상장), 인수합병, 자금 조달(투자유치)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

검토사항	내용
공고내용과의 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,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•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,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•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"중단"이나 "극히 불량(불성실수행)"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
의무사항 불이행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(각종 보고서 제출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참여제한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아니함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1) 사전지원제외(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업의 부도 2.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 3.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(단, 회생인가를 </div>

검토사항	내용
	<p>받은 경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</p> <p>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5.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 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이때,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</p> <p>-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(CB, BW 등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/p> <p>6.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p> <p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p> <p><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: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·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: 주관연구 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·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<p>2) 사후관리(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% 이상 2.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% 이하 3. 부분자본잠식 4.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.0배 미만 5.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한정" <p><사후관리 조치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"사후관리대상"에 해당됨을 보고
과제 참여율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• 단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• 참여연구원(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)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• 국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

검토사항	내용
	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 사업을 포함하여 130%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

□ 유의사항

공통사항
<p>가.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-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</p> <p>나.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</p> <p>다.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</p> <p>라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</p> <p>바.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</p> <p>마.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하위 기재.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</p> <p>바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</p> <p>사. 선정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에 지원 후 5년간 사업 성과(매출, 고용, 투자)를 제출하여야 함</p>

□ 관련법령 및 규정
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○ 포항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 자체 기준

5. 신청방법 및 절차

□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

- 사업공고 및 관련 양식 교부
 -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홈페이지(<http://innoplis.postech.ac.kr>)
 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innopolis.or.kr>)
 - 포항공과대학교(<https://www.postech.ac.kr>)
 - (재)포항산업과학연구원(<http://www.rist.re.kr/>)
 - 포항테크노파크(<https://www.ptp.or.kr/>)
 - 포항시(<http://www.pohang.go.kr/>)
- 제출방법 : PDF파일로 E-mail 제출
- 접수기간 : '23. 6. 5.(월) ~ '23. 6. 16.(금), 16:00까지
- 접수처 :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임지영 주무관 (054-279-9305, ljy940215@postech.ac.kr)

□ 제출자료

-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제출

번호	서 류 명	서식	비고
1	사업신청 공문	-	수혜기업 제출
2	연구개발계획서		수혜기업 제출
3	사업자등록증(원본대조필)		모든 기관 제출
4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	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
5	수행기관(기업) 의무이행 서약서 ※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		모든 기관 날인하여 제출
6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7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		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
8	연구윤리 · 청렴 및 보안서약서	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9	표준재무제표 증명(원본대조필)	-	최근 3개년도('20 ~ '22), 비영리기관 제외
10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*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최근년도 기준, 수혜기업 제출(비영리 제외)
11	전문수행기관 견적서	-	수혜기업 제출

문의처

- 담당부서 :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기술사업팀
- 사업담당자 연락처

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임지영 주무관	054-279-9305	ljy940215@postech.ac.kr

6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,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전문수행기관에게 있음